

# 규약(안)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미래교육복지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쳐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실시한다.

연구소 산하의 글로벌복지센터에서는 글로벌인(다문화인)의 복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실제로 이를 현실적인 삶의 지평에서 해결,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글로벌인들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복지 정책 연구와 한국인과 글로벌인이 교류하는 장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한일 미래교육센터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육 문화에 대한 연구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육 문화에 대한 학술적 교류연구를 실시한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회와 학술 강연회, 공개강좌,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고, 연구 논문집 및 소식지를 발간하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적을 출간한다. 또한 한국, 일본 양국에 기여할 수 있는 서적도 번역 출간한다.

본 센터에서는 국내외의 연구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학술 교류를 실시하여 한일 교육 문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소는 이 두 센터의 모든 활동을 발판으로 국제 관계 발전에 봉사하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조직】 본 연구소는 산하에 '글로벌복지센터'와 '한일미래교육센터'를 둔다.

###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글로벌복지센터의 사업

- 1) 글로벌인들의 복지 문화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안제시
- 2)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활동  
(장학, 공교육 사업)
- 3) 글로벌 2세들의 새로운 리더십 육성 등을 위한 활동
- 4) 글로벌인들의 공동체 대안 형성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사회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
- 5)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 2. 한일미래교육센터의 사업

- 1) 한일 교육 문화에 대한 연구자료 조사 및 수집
- 2) 한일 교육 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
- 3) 연구 발표회, 학술 강연회, 공개강좌, 공개 토론회
- 4) 연구 논문집 및 소식지 발간, 서적 출간, 번역
- 5) 국내외 연구 기관 및 단체 등과 학술 교류

제 5 조 【소재】 본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용인에 두며, 목적상 필요한 지역에도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 제 6 조 【회원의 가입】

본 연구소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받을 권리와 본 연구소의회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연구소 회원은 규약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회통념상 준수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제 8 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본 연구소의 회원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 제 9 조 【회원의 징계】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연구소장
3. 이사(센터장 2인 포함)
4. 감사

**제11조 【 임원의 임기 】**

본 연구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이사장, 연구소장과 이사로 전체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연 최소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한다.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 임원의 선임 방법 】**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 1)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 이사장의 직무 】**

- 1)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장은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 이사장 대행자의 지명 】**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결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 【 이사회의 구성과 직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준비 및 총회 결정사항의 처리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수립
3. 내규의 제정과 개정
4. 각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장 등 간부의 선임
6. 회원의 가입과 제명에 관한 사항
7. 추가 운영위원 선임
8. 기타 중요한 안건의 처리

#### 제18조 【글로벌복지센터에 대한 세부

**규정】 제1항 【글로벌복지센터 임원의**

**구성】**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대표
3. 부대표(2인 내외)
4. 총무 (2인 내외)

**제2항 【임원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항 【센터장 및 센터장의 직무】**

1. 센터장은 이사장이 위촉하고, 본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4항 【운영위원회】**

본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항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과 글로벌복지문화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항 【운영위원회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
4.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 제8항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항 【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년도는 매해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 제10항 【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연구소회원의 회비,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금 및 기부금, 연구소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1항 【자문위원회의 구성】

1. 본 센터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문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사장이위원장이 된다.
4.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9조 【한일교육센터에 대한 세부】

### 규정】 제1항 【한일교육센터의 구성】

본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2. 수석 연구원
3. 연구원
4. 객원연구원
5. 총무

### 제2항 【연구원 자격】

본 센터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석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업무 수행을 전담한다.
2.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본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3.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 목적에 상당한 국내.외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3항 【센터장】

센터장은 수석 연구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연구사업과 관계된 제반 업무를 관

장하고 연구소장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항 【총무】

총무는 센터장이 위촉하고 연구소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 제5항 【운영위원회】

본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6항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항 【운영위원회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4.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 제9항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항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해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 제11항 【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연구소회원의 회비,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금 및 기부금, 학술용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장 총회

####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 제2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이사장이 임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 【총회의 결의 및 위임】

본 연구소의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은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 할 수 있다.
2.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구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4장 기타

#### 제24조 【고문】

본 연구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25조 【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각 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설립 첫해인 2022년에 한해서는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궐석으로 보임된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26조 【개별기구와 부설기관】

본 연구소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기구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보 칩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임원 구성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2조 【규약개정】 본 연구소의 규약은 이사회 의결로 발의, 개정한다.

제3조 【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